

■ 지진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 안내 ■

01 지원대상

2017.11.15. 지진에 따른 건축물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

02 지원내용

-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

지진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· 선박 ·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
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취득시 취득세 면제

 - 건축물 : 종전 건축물 연면적 범위내

 -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 :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신제품구입가액 범위내

- 기한연장 : 취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의 경우 지방세에 대한 신고 · 납부기한 등을
6개월(최대 1년) 범위내에서 연장

- 징수유예 : 지방세의 고지유예 · 분할고지 · 징수유예 · 체납액의 징수유예를
6개월(최대 1년) 범위내 조치

- 체납처분 유예 :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

- 세무조사 연기 :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연기

03 지원신청방법

피해사실확인서 등 지진 피해 입증서류 첨부하여 해당 구청 세무과에 신청서 제출
(자동차, 기계장비 등록시 취득세 감면 신청할 경우 피해사실확인서와 말소확인서류 구비하여 차량등록과 제출)

04 처리 절차



05 문의처

구청 남구청 054-270-6231
세무과 북구청 054-240-7231

포항시청
재정관리과 054-270-2485

포항시청 054-270-4313
차량등록과 054-270-4314

포항시민 여러분!